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시험수당지급기준표

수 당 별	구 분		수 당 액	비 고
출제수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 (문제당)	2,300원	
	주 관 식	6급이하 시험 (1과목 위원당)	45,000원	
채점수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(용시자1인 1과목)	22원	
	주 관 식	10부까지 기본료	25,000원	
		1부초과 부당	660원	
면 접 및 실기시험 수 당	5급이상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	30,000원 1,000원	상한 50,000원
	6급이하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	15,000원 500원	상한 50,000원
	종 사 원 (일당)	1인당	6,000원	
	문 제 편 집 수 당	일 당	7,000원	
	문 제 선 정 심 의 수 당	과 목 당	35,000원	
감 시 수 당	공 휴 일		10,000원	
	평 일		6,000원	

* 비고: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연급작업시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.

신구조문대비표

<별표>

시험수당지급기준표

구 분			현 행		개 정		
			수 당 액	비 고	수 당 액	비 고	
출제수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 (문제당)	<u>2,200원</u>		<u>2,300원</u>		
	주 관 식	6급이하 시험 (과목당)	<u>40,000원</u>		<u>45,000원</u>		
채점수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 (용시자 1인 1과목)	<u>40원</u>		<u>22원</u>		
	주 관 식	10부까지 기본료	<u>22,000원</u>		<u>25,000원</u>		
		1부 초과 부당	660원		660원		
면 접 및 실기수당	5급이상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	30,000원	상 한	30,000원	상 한	
		10명 초과 1인당	1,000원	50,000원	1,000원	50,000원	
	6급이하 (일당)	10명까지 기본료	<u>10,000원</u>	상 한	<u>15,000원</u>	상 한	
		10명 초과 1인당	500원	50,000원	500원	50,000원	
	종 사 원 (일당)	1인당	6,000원		6,000원		
문제편집 수 당	일	당	<u>6,000원</u>		<u>7,000원</u>		
문제선정 심의수당	과	목	당	<u>30,000원</u>		<u>35,000원</u>	
감시수당	공	휴	일	<u>9,000원</u>		<u>10,000원</u>	
	평	일		6,000원		6,000원	

* 비교 :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연금작업시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.